

4단계 BK21 사업
버추얼 스마트시티 시각화시스템
융합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2021. 3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4단계 BK21 사업
버추얼 스마트시티 시각화시스템 융합교육연구단

버추얼 스마트시티 시각화시스템 융합교육연구단 자체 운영규정

2021.02.01. 제정

제1장 총 칙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제15조에 의거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4단계 BK21 사업 버추얼 스마트시티 시각화시스템 융합교육연구단』(이하 “교육연구단”이라 함)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정함으로써 그에 따른 사업목표의 달성과 효율적인 관리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사업구분 및 기간) ①본 사업은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중 혁신인재양성사업 유형이다.

②본 사업의 사업기간은 7년으로 하고, 그 기간은 2020년 9월 1일부터 2027년 8월 31일까지로 한다.

③연차별 사업기간은 매년도 3월 1일부터 다음연도 2월말까지로 한다. 단 1차년도의 경우 2020년 9월 1일부터 2021년 2월 28일까지로 하며 마지막 차년도는 2027년 3월 1일부터 2027년 8월 말까지로 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이 규정은 본 교육연구단의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및 참여대학원생에게 적용한다.

②이 규정에서 따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다음의 규정을 따른다.

1.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훈령
2.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운영에 관한 지침
3.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4. 고려대학교 세종산학협력단 교외연구비 관리지침
5.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 4단계 두뇌한국(BK)21 사업 관리 운영 규정

제2장 교육연구단의 운영 및 구성

제 4조 (교육연구단 구성) 교육연구단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의 기준 요건에 준하여 교육연구단장,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지원대학원생, 행정직원으로 구성한다(교육연구단 구성원은 서약서 및 개인정보 수집·활용·제공 동의서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제 5조 (교육연구단장의 권한과 책임) ① 교육연구단장은 사업의 총괄책임자로서 다음 각호의 권한과 책임을 갖는다.

1. 사업계획서 작성 및 제출
2. 사업의 총괄 수행
3. 사업결과 및 사업비 사용 실적의 보고
4. 사업 실적 및 성과의 홍보 및 확산
5. 사업수행을 위한 인사 및 예산 집행 권한

② 교육연구단장의 자격, 대리, 교체 등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른다.

제 6조 (조직의 구성) 본 교육연구단의 구성은 참여교수, 참여대학원생, 신진연구인력 및 행정 직원으로 이루어지며, 사업의 효율적인 기획과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와 자체평가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제 7조 (운영위원회) ① 교육연구단 운영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 및 참여교수 최소 2인을 위원으로 구성하며, 교육연구단 운영 규정에 없는 사항 및 기타 세부사항은 융합연구단 운영위원회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며 필요시 교육연구단장의 결의로 최종 의결한다.

1. 교육연구단 수행에 관한 중요한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교육연구단 지출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3. 교육연구단의 자체운영규정 제·개정에 관한 사항
4. 참여교수 변경 및 증가에 관한 사항
5. 교수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6. 참여대학원생 및 지원대학원생의 선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
7. 참여대학원생 인센티브 지급에 관한 사항
8. 장단기 해외연수 지원에 관한 사항
9. 신진연구인력 지원 및 운영에 관한 사항
10. 기타 교육연구단 운영에 관한 중요한 사항

제 8조 (자체평가위원회) ① 교육연구단 운영 성과를 평가하고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효과적인 교육연구단 운영을 위하여 교육연구단 내 자체평가위원회를 둔다.

② 자체평가위원회는 교육연구단장의 추천에 의한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장은 교육연구단장이 되며, 외부 전문가를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③ 자체평가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하며,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자체평가위원회의 기능은 다음 각호와 같다.

- 가. 주요 협약사항의 이행상황에 대한 자체평가
- 나. 평가결과 분석을 통한 교육연구단 운영 개선

제3장 대학원생 지원

제 8조 (용어의 정의) ① “참여대학원생”은 사업 참여교수의 지도학생 중 주 40시간 이상 교육 및 연구에 전념하는 전일제 등록 대학원생(4대보험 미가입자)으로서 E·ICT-문화·스포츠 융합전공을 신청한 입학 후 석사 2년, 박사 4년, 석·박사통합과정 6년이 경과하지 않은 재학생을 말한다. (단, 군복무 및 휴학기간은 위 기간에 미산입)

② “지원대학원생”은 참여대학원생의 70% 이내에서 선발하여 연구장학금 수혜를 받는 대학원생을 말한다.

③ 학위과정 수료자는 연구생 등록이 된 경우에만 참여대학원생의 자격을 갖는다.

제 9조 (참여 및 지원대학원생 선발 기준) ① E·ICT-문화·스포츠 융합전공 합격자는 E·ICT-문화·스포츠 융합전공 진입을 신청한 학생에 대하여 융합전공협의회에서 결정한다.

② 8조 1항에 의하여 융합전공진입이 허가된 학생은 4단계 BK21 사업 버추얼 스마트시티 시각화시스템 융합교육연구단 “참여대학원생” 자격을 가진다.

③ “지원대학원생”은 융합전공협의회 협의에 따라 매년 3월과 9월에 학기별로 선발한다.

제 10조 (지원기간) 과제수행기간인 2020. 09 01.~2027. 08월 말까지 한 학기 단위를 기준으로 지원한다.

제 11조 (지원금액) 지원대학원생에 대한 지원 단가는 석사 월70만원, 박사 월130만원, 박사수로 100만원을 최저 기준액으로 하며, 연구활동 기여도, 교육기여도(학부 학생 대상 조교활동), 대학원 수업 충실도, 지도교수 평가 등 지원대학원생의 경쟁유도와 실력도모를 위하여 학생별 지급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2조 (인센티브) 제 11조에 언급한 내용에 근거한 연구장학금 지원금액 외에도 우수학생이나 융합연구단에 기여한 학생의 경우 운영위원회의 심의 후에 인센티브를 지급할 수 있다.

제 13조 (의무) ① 사업에 참여하는 대학원생은 당해 대학원에서 주40시간 이상 과제 관련 연구, 수업에 전념할 수 있어야 하며 사업단이 주관하는 제반 사업에 적극 참여하여야 한다

② 참여대학원생은 사업팀의 요구에 따라 4단계 BK21 사업 실적 제출의 대상이 되며 졸업 여부, 취업 여부 및 분야 등 경제활동과 관련한 정보를 제공할 의무를 지닌다.

③ 참여대학원생은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주6시간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으나 융합연구단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6시간 이내의 강의 ‘시간’은 출강시간을 의미하며 사이버 강의, 평생교육원 강의도 포함된다.

④ 참여기간 중 취업이나 프로젝트 참여 등의 경우 자진 보고해야 하며 BK지원에 대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지고 지원금액 일체를 반납하여야 한다.

제 4장 참여교수 선정 및 변경

제14조 (참여교수의 자격 및 소속) 참여교수의 초기 선정은 사업신청서의 내용에 따라 E·ICT-문화·스포츠 융합전공 소속 전체 교수 중, 다음의 기준에 따라 10인이 참여하는 것으로 결정한다.

1. 사업기간(2020.09-2027.08)에 안정적으로 연구와 교육에 참여할 수 있는 교수.
2. 지난 5년 동안의 연구업적이 우수한 교수
3. 4단계 BK21 사업 공고상의 참여교수 자격요건 기준을 만족하는 교수

제 15조 (참여교수 변경) ① 교육연구단장은 참여교수의 변경에 대하여 운영위원회 논의를 거쳐 자체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②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그 수를 증원할 경우 연구단장은 해당 교수의 자격 요건을 검증해

야 하며,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변경 사유와 해당 교수의 연구 업적을 첨부하여 전문기관의 장에게 승인 받아야 한다.

③ 참여교수를 교체하거나 증원하는 것은 가능하나, 사업 신청 시를 기준(중간평가 이후는 재선정신청서 기준)으로 참여교수의 수를 줄일 수 없다.

④ 연구단의 참여교수 수가 신청 시를 기준으로 줄어든 경우에는 6개월 이내에 신규 교수 임용 등을 통해 신청 당시의 참여교수 규모를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예측할 수 없는 사유로 부득이하게 6개월 이내 참여교수 충원이 어려운 경우 전문기관 장의 승인을 통해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 5장 성과급 지급 기준

제 16조 (목적) 본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버추얼 스마트시티 시각화시스템 융합교육연구단이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원활한 사업수행을 촉진하고 참여인력의 연구의욕을 고취하기 위한 성과급 지급 기준을 설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17조 (대상자금) 본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성과급의 재원은 국고지원금으로 한다.

제 18조 (지급 기준) ①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지원대학원생에게는 모든 연구 및 융합프로그램 기여 실적에 대해 교육연구단이 마련한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신진연구인력을 비롯한 참여교수에게 1년 동안의 연구 및 융합프로그램 기여 실적을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매년 3월 성과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1인당 연간 지급액은 480만원 이내로 한다.

③ 참여·지원대학원생은 매 학기 연구 및 융합프로그램 기여 실적을 성과급 지급기준에 의거하여 점수로 산출하고 매년 8월, 2월에 지급할 수 있다.

제 19조 (기타) ① 매년 사업을 마감하기 전 국고에서 편성된 인센티브 예산이 남는 경우, 지난 1년간 연구실적을 BK기준으로 산정하여 연구 실적에 비례하여 지급할 수 있다.

② BK사업운영에의 기여 및 국제학술회의 활동 등 기타 이유로 성과급을 지급할 만한 상황이 발생하거나 본 규정에 특별히 명기되지 않은 사항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6장 신진연구인력 채용과 활용

제 20조 (구성) 신진연구인력은 박사후과정생과 계약교수(연구교수)로 구성한다.

제 21조 (임용기준) ① 박사후과정생 채용과 지원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박사후과정생의 최초 채용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로 한다.
2. 박사후과정생은 연구단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단에서는 박사후과정생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한다.
4. 박사후과정생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단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② 계약교수(연구교수) 채용과 지원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계약교수(연구교수)의 최초 채용 자격은 박사학위 취득 후 5년 이내인 자로 한다.
2. 계약교수(연구교수)은 연구단에서 교육과 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연구단에서는 계약교수(연구교수)에게 사업비에서 월 300만원 이상을 인건비로 지원한다.
4. 계약교수(연구교수)은 연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연구단장 및 대학의 승인 하에 학내·외, 주야를 불문하고 학기당 6학점 이내의 강의를 할 수 있다.

③ 신진연구인력의 계약기간은 2년 이내로 하되, 최대 4년까지 할 수 있다.

④ 신진연구인력은 소속 사업단 내에서 교육·연구에 전념하는 것을 원칙으로 사업성과 극대화의 의무가 있다. 운영위원회는 신진연구인력의 BK사업의 기여도(논문, 학회발표 실적)와 학과 기여도에 따라 재채용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⑤ 신진연구인력은 해당 년도 실적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원받을 수 있다. 인센티브의 적용은 운영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 7장 국제협력경비 지원

제 22조 국제협력경비 ① 참여인원의 단기연수, 국제학술대회, 해외학자 초빙 및 기타 국제협력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한다.

② 이 조항 외에 명시되지 아니한 세부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운영위원회 결정에 따른다.

제 23조 해외단기연수 ① 연구성과가 우수한 참여·지원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의 해외연구역량을 향상하기 위해 해외 현지조사, 현지조사 관련 연계프로그램 참여를 지원한다.

② 연구단 단위의 조사일 경우 인솔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지원대학원생(예산 범위 내에서 선발)으로 구성한다.

③ 해외단기연수에 필요한 경비는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과 『4단계 BK21 사업 예산편성 및 집행기준』 및 본교의 여비 규정을 준수하여 지원(항공료, 체재비 등)한다.

④ 해외단기연수에 참여한 참여·지원대학원생 및 신진연구인력은 다음의 사항을 성실히 수행할 의무가 있다.

1. 해외단기연수를 위한 연구계획서 제출
2. 해외단기연수를 위한 세미나 참석
3. 해외단기연수 이후 결과보고서와 자료(사진, 녹음 자료 등) 제출

⑤ 해외단기연수를 위한 연구계획서의 평가항목과 평가점수 산정은 운영위원회에서 결정한다.

제 24조 국제학술대회 ① 참여·지원대학원생과 신진연구인력이 국제학술대회에서 발표할 경우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의거하여 발표비, 체재비, 항공료 등을 지원할 수 있다. 단, 참여교수의 경우 참여·지원대학원생과 공동 발표일 경우에만 지원할 수 있다.

② 국제학술대회 지원은 발표자에 한하고, 공동 발표일 경우에는 여비 지원을 2인 이내로 한정한다. 학술대회 지원 항목은 항공료, 참가비 및 등록비, 체류기간 동안의 여비를 발하며 학술대회 일정에 한해서 지급한다.

③ 국제학술대회 요건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에 따라 4개국 이상이 참여하며 총 구두 발표 논문이 10건 이상, 구두 발표 논문 발표자 중 외국기관 소속 외국인이 50%(다만,

국내 개최 시에는 1/3 이상)가 되어야 한다.

제 25조 해외 석학 초청

- ① 해외 석학 초청 특강은 참여인력의 국제적 연구 안목과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개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 ② 해외 석학 초청 대상자는 연구단에서 해당분야의 저명도를 평가하여 결정한다.
- ③ 해외 석학 초청 경비(여비 및 체재비)는 본교 연구비 규정에 의거하여 지급한다.

부칙

- 1. 이 규정은 사업의 시작 일인 2020년 9월 1일부터 소급하여 시행한다.
- 2. 이 규정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과 한국연구재단의 자체 지침 및 소속 대학의 규정을 참조한다.
- 3. 이 규정은 『4단계 BK21 사업 관리 운영 지침』 및 본 연구단 규정 개편 이전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4단계 BK21 사업 ARMR 시스템·콘텐츠 융합연구단 성과급 지급 기준

1. 본 BK21 사업단은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 참여·지원대학원생에게 연구력 증진과 사업단 참여도를 증진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기준에 의하여 인센티브를 지급한다.
2. 참여교수, 신진연구인력의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 480만원
참여 대학원생의 1인당 연간 최대 지원액: 석사 300만원, 박사 500만원
(BK 성과 기준 인센티브+논문 인센티브 합산 금액)
3. 지급 항목 및 기준 : 불임의 성과급 기여도 평가 기준표에 준함.

붙임 1. 참여교수 성과급 기여도 평가기준표

평가항목	평가점수 (기여도)		참여교수				
			○○○	○○○	○○○	○○○	○○○
	자연·공학 계열	인문·사회 계열	자연·공학계열			인문·사회계열	
1. SCI(E) 논문							
1) 논문 게재 건수 (SCI/SCIE/SSCI/ 등재지/등재후보지 등 학교 환산기준에 따름)	15	20	5	8	5	4	4
2) 주저자 여부(제1저자, 교신저자)	15	20	5	6	4	3	3
2. 특허							
- 국제 특허 등록	3		2	2	2	0	0
- 국제 특허 출원	3		2	0	0	0	0
- 국내 특허 등록	2		2	2	1	0	0
- 국내 특허 출원	2		1	1	0	0	0
3. 기술이전 건수	10	0	3	0	3	0	0
4. 연구비/산학협력 건수	10		5	0	0	2	2
5. 취 . 창업 지원	5		0	0	0	0	0
6. 기업연계 학생지도 : 산업체 인턴, 캡스톤 디자인(산업체 실무자 멘토링)	5		0	0	0	0	0
7. 국내,국제학회 초청 강연 및 좌장	5		5	5	0	0	0
8. 융합 교과목 설계 및 강의	10		0	5	0	0	0
9. 사업단 주관 세미나 초청 및 참석 건수*	5		3	3	2	1	1
10. BK 회의 참석 건수/보고서 작성*	10		3	3	2	1	1
총합계	100		358	382	213	145	145
금번 지급액에 대한 기여도(%)			29%	31%	17%	12%	12%

주1) * 표시 항목은 항목별 평가 근거 별첨함.

붙임 2. 참여대학원생 박사과정 성과급 평가기준표

(총점 기준, 논문 인센티브는 편당 학교 환산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 논문 인센티브 요구 조건

1. 융합연구단 소속 참여교수가 반드시 교신저자여야 함.
2. 학교 기준에 준함.

평가항목	평가점수 (기여도)	참여대학원생-박사과정				
		○○○	○○○	○○○	○○○	○○○
1. SCI(E) 논문						
1) 논문 게재 건수 (SCI/SCIE 등 학교 환산기준에 따름)	15	5	8	5	4	4
2) 주저자 여부 (제1저자)	45	5	6	4	3	3
2. 특허						
- 국제 특허 등록	3	2	2	2	0	0
- 국제 특허 출원	3	2	0	0	0	0
- 국내 특허 등록	2	2	2	1	0	0
- 국내 특허 출원	2	1	1	0	0	0
3. 기술이전 건수	5	3	0	3	0	0
4. 산학 프로그램 산업체 인턴, 캡스톤 디자인(산업체 실무자 멘토링) 참여도	5	0	0	0	0	0
5. 국내,국제학회 발표	10	5	5	0	0	0
6. 사업단 주관 세미나/행사 참여도*	5	3	3	2	1	1
7. BK 보고서 참여*	5	3	3	2	1	1
총합계	100	358	382	213	145	145
금번 지급액에 대한 기여도(%)		29%	31%	17%	12%	12%

주1) * 표시 항목은 항목별 평가 근거 별첨함.

붙임 2. 참여대학원생 석사과정 성과급 평가기준표

(총점 기준, 논문 인센티브는 편당 학교 환산기준에 따라 별도 지급)

* 논문 인센티브 요구 조건

1. 융합연구단 소속 참여교수가 반드시 교신저자여야 함.
2. 학교 기준에 준함.

평가항목	평가점수 (기여도)	참여대학원생-석사과정				
		○○○	○○○	○○○	○○○	○○○
1. SCI(E) 논문						
1) 논문 게재 건수 (SCI/SCIE 등 학교 환산기준에 따름)	10	5	8	5	4	4
2) 주저자 여부 (제1 저자)	10	5	6	4	3	3
2. 특허						
- 국제 특허 등록	3	2	2	2	0	0
- 국제 특허 출원	3	2	0	0	0	0
- 국내 특허 등록	2	2	2	1	0	0
- 국내 특허 출원	2	1	1	0	0	0
3. 기술이전 건수	3	3	0	3	0	0
4. 취 . 창업 프로그램 참여	7	0	0	0	0	0
5. 기업연계 학생활동 : 산업체 인턴, 캡스톤 디자인(산업체 실무자 멘토링)	10	0	0	0	0	0
6. 국내,국제학회 발표 건수	10	5	5	0	0	0
7. 융합 교과목 추가 이수	10	0	5	0	0	0
8. 사업단 주관 세미나/행사 참여도*	10	3	3	2	1	1
9. 교내외 비교과 프로그램 참여	5					
10. 융합전공 신입생 유치 기여도	10					
11. BK 보고서 작성 참여*	5	3	3	2	1	1
총합계	100	358	382	213	145	145
금번 지급액에 대한 기여도(%)		29%	31%	17%	12%	12%

주1) * 표시 항목은 항목별 평가 근거 별첨함.